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1항).

II.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은 2015년 12월 20일로, 발효일로부터 10년은 2025년 12월 19일임.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 위하여 그 시행기간을 2030년 12월 19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 그런데, 제6조제1항은 2025년 12월 19일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즉, 형식적으로는 해당 조항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

현행 제6조제1항의 효력이 상실된 2025년 12월 20일부터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가 발생하게 됨.

이 경우, 개정안과 같이 2025년 12월 20일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사이 공백에 대한 부칙규정 없이 시행일만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효력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일몰기한 연장이 지연되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에 공백이 생긴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한 한정된 기간에 대하여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안 부칙에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¹⁾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1)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에 대해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바로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잠정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례 규정을 둠(법제처(2026), 법령 입안·심사 기준, 657면).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u>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u>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u>

(전문위원 최 기 도)